

1. 개정이유

- ☐ 현행 비관리대상인 초급속(200kVA 초과)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설치됨에 따라 관리대상 용량을 확대(200kVA 이하→500kVA 이하)하여 안전관리 필요
- ☐ 관리대상 범위 용어가 정격입력 또는 정격출력인지 모호한 ‘정격용량’인 제품(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들에 대한 의미 명확화 필요
- ☐ DC 42V이하 온열제품(전기썸질기 및 발보온기 등)의 관리대상 수준 조정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필요

2. 주요내용

- ☐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용량 확대
 -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출력 200kVA 이하 → 500kVA 이하) 추진
- ☐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
 -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 수정(‘정격용량’ → ‘정격출력’)
- ☐ 안전관리수준 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 직류전원 전기썸질기 및 발보온기는 시행규칙 [별표4]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서 삭제 및 [별표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분류 바목, 사목,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모델구분
바. 절연변압기		○ 정격전압 ○ 정격출력 ○ 권선의 절연종류
사. 전기기기	1) 일반전기기기	(현행과 동일)
	2) 전기차 충전기	○ 정격전압 ○ 정격출력 ○ 충전전력공급방식 ○ 고정방법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 직류전압 ○ 정격출력
	2) 리튬이차단전지	(현행과 동일)
	3) 리튬이차전지시스템	(현행과 동일)

[별표 3] 제1호 분류 바목,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품목
바.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출력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 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출력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3) (현행과 동일)

[별표 4] 제1호 분류 바목, 사목, 차목,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품목
바. 절연변압기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사. 전기기기	비고) 정격출력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21) (현행과 동일)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출력이 5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3)~31) (현행과 동일)
	32) 삭제 <2022.00.00>
	33)~42) (현행과 동일)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7) (현행과 동일)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출력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14) (현행과 동일)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정격출력이 2M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5] 제1호 분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품목
사. 전기기기	1)~15) (현행과 동일)
	16)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7) 그 밖에 1)부터 1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13] 제3호 분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품목
사. 전기기기	1)~22) (현행과 동일)
	23) 삭제 <2022.00.00>
	24)~31) (현행과 동일)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7) (현행과 동일)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출력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12) (현행과 동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차충전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별표 4 제1호사목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4 제1호사목3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4 제1호사목3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